

## 7. 학적 변동 관련(휴학, 복학, 자퇴, 제적 등)

### 가. 휴학

#### 1) 휴학사유

가) 질병: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4주 이상의 수업을 출석할 수 없을 때

나) 병역: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입대를 하는 경우

다) 창업: 사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거나 기 창업된 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창업을 사유로 하는 휴학은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휴학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창업휴학 허용 제외 대상 업종>

번호	대상 업종	분류 코드번호
1	금융 및 부동산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통계청 발행 제9차 한국표준사업분류코드에 의함

(2) 창업휴학의 자격은 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휴학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완료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1) 자기개발

(2) 가계곤란

(3) 임신·출산·육아

(4)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5) 장애학생

(6) 그 밖에 학장이 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마) 군입대후 입영(소집) 취소(귀향조치) 시

병역휴학한 학생이 입영(소집) 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귀향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역휴학을 취소 신청하고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이 특별휴학을 허가한 경우(학칙 제14조제4항)

(1) 학칙 제14조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질병으로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학칙 제14조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3) 9학기(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자로 졸업 기준 충족에 필요한 이수대상 과목이 해당 학기에 설강되어 있지 않을 경우

(4)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

수험 준비를 할 경우

사)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거나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이 휴학을 권고한 경우(학칙 제14조제2항)

2) 휴학기간(학칙 제14조제3항)

가) 휴학기간: 휴학 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통산하여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1) 신입학한 학생: 8개 학기
- (2) 편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 4개 학기(단, 4학년 편입학 학생은 2개 학기)

나) 휴학기간의 산입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학은 휴학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1)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기간
- (2)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기간
- (3) 창업휴학
- (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총장이 권고한 휴학

나) 휴학사유별 휴학기간: 휴학사유별 휴학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질병 휴학: 휴학 횟수별 1년 이내
- (2) 병역 휴학: 군 복무기간(입영일이 속한 학기로부터 기본 2년, 복무기간 연장 시 해당 복무기간)
- (3) 임신·출산·육아 휴학: 통산 2년 이내
- (4) 창업휴학: 통산 2년 이내
- (5)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휴학: 휴학 횟수별 최장 1년
- (6)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총장이 권고한 휴학: 총장이 정한 기간
- (7)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 수험준비를 할 경우의 휴학: 해당 연수기간 또는 2차 이상의 수험 준비기간
- (8) 9학기(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자에게 해당 학기에 졸업기준에 필요한 이수대상 과목이 설강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휴학: 1학기

3) 제출서류

가) 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에 휴학종류별 신청서를 입력 후 출력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

나) 질병, 병역의무의 이행, 창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 (1) 질병: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병·의원 진단서
- (2) 자기개발 및 가계곤란: 지도교수 확인서(휴학 신청서 양식에 의함)
- (3) 임신·출산·육아: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4) 창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5) 병역: 군입영통지서 (소집통지서)
- (6) 군입대 전역 후 일반휴학: 전역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및 일반휴학 증빙서류
- (7) 군입대후 입영(소집) 취소(귀향조치)시: 귀향증명서
- (8) 기타 휴학: 해당 사유로 인하여 수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지도교수 확인서(휴학신청서 양식에 의함)

다) 총장이 허가한 특별한 사유(학칙 제14조제4항)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 (1) 학칙 제14조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질병으로 5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의원 진단서
- (2) 학칙 제14조제3항에 의한 휴학기간이 경과된 자가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고처리기관의 확인서 또는 지도교수 확인서(휴학 신청서 양식에 의함)

(3) 9학기(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 등록자로 졸업기준 충족에 필요한 이수대상 과목이 해당 학기에 설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 확인서(휴학 신청서 양식에 의함)

(4)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거나 2차 이상의 수험 준비를 할 경우: 해당 합격을 증빙하는 서류

4) 휴학의 허가: 총장의 승인으로 허가한다.

5) 일반휴학자의 군입대 휴학 전환: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가 군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입대 전에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군입대 7일 전부터 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에서 신청 가능)

6) 휴학의 취소: 휴학허가를 총장으로부터 받은 자가 휴학사유 소멸로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입학 첫 학기 휴학의 제한: **신입학, 재입학, 편입학**한 학생은 다음 각호의 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1) 질병

(2) 병역의무의 이행

(3) 임신·출산·육아

8) 휴학자의 성적인정

휴학자의 당해 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휴학자, 학칙시행세칙 제7조제4항제4호에 의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 및 각종 자격시험에서 1차 이상 합격하고 2차 준비를 위한 특별휴학자, 신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자로서 이수중인 교과목 별로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한 자는 기말고사에 대하여 조기사험을 신청하고, 이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휴학기간은 다음 학기부터 개시한다.

9)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1/3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학과장의 신청으로 휴학 처리할 수 있다.

10) 휴학 연장 제도 시행

가) 시행목적: 학생 개인의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휴·복학 미신청 및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여 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시행개요: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실수 및 누락으로 휴·복학 신청 기간 내 휴·복학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 휴학 기간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학과장의 신청으로 일반휴학 연장 처리

다) 시행방법: 2018-1학기부터 일반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휴학 연장제도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적용

라) 대상자(학칙 제18조제2항)

(1)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1/3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소정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복학**

1) 복학의 시기

- 가) 복학은 휴학 만료 학기 수업종료일로부터 복학 학기 개시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일수 1/3 이내까지 하여야 한다.
- 나)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가 매 학기 수업일수 1/3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실제로 수업일수 2/3 이상 수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복학 신청 절차: 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 → 학사관리 → 복학신청 → 복학신청 메뉴 클릭(군 복학자의 경우 전역증 또는 전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다.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에서 자퇴신청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CA 및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 제적**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할 수 있다.

- 1) 휴학기간이 지난 후 수업일수 3분의 1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2)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징계처분으로 제적이 확정된 경우
- 5) 「학생평가규정」에 따른 학사경고 제적 대상인 경우
  - 2)호에도 불구하고 1)와 2)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 제14조제3항의 범위에서 학과장의 신청으로 휴학 처리할 수 있다.

**마. 학적부 변경**

- 1) 학칙시행세칙 제31조(학적부 정정)에 의거하여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증명서류가 첨부된 학적부 정정신청서를 학사지원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복학시기, 제적안내, 성적표 발송 등 학적관련 중요사항을 안내받기 위해서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수정을 해야 함

2) 변경 방법

- 가) 본인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 “개인정보 수정” 에서 수정 가능
- 나)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보호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학적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서비스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E-mail로 신청하여 변경 가능함
  - ※ 담당자 연락처: 063-220-2135, Fax: 063-220-2646

다) 학적부 정정 처리는 2-3일 이내에 가능하며 처리된 후 문자메시지로 통보함